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6.01.01.)

오월방문요양센터를 믿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돌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며 돕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2026년도 수가표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이상	16,940	2,541	17,450	2,618
60분 이상	24,580	3,687	25,320	3,798
90분 이상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이상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이상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이상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이상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이상	68,030	10,205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하위년차성 만성질환자)	40%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보기비용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②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⑤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금액은 전액 수급자(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오월방문요양센터